

「평생교육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교육부 (평생학습정책과)
연 월 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교육부 재검토 기한 도래 일몰규제 검토 결과에 따라,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서류 제출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인가시, 지적도 서류 제출의무 면제(안 제12조 및 제13조)
- 나.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및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신청시,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이력서 제출의무 삭제(안 제17조 및 제2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통하여”를

“통하여 해당 시설의 교지·실습지의 지적도와”로 한다.

7. 위치도

제1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위치도

제17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21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) ① (생략)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 1. ~ 6. (생략) <u>7. 지적도 및 위치도</u> 8.·9. (생략)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<u>통하여</u>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 ④ (생략)	제12조(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7. 위치도</u> 8.·9.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통하여 해당 시설의 교지·실습지의 지적도와</u>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) ① (생략)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 1. ~ 8. (생략) <u>9. 지적도 및 위치도</u> 10.·11. (생략) ③ (생략)	제13조(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<u>9. 위치도</u> 10.·11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	제17조(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

등) ① (생 략) ② 영 제49조제1항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 1. ~ 4. (생 략) 5. <u>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</u> 6. ~ 8. (생 략) ③ ~ ⑥ (생 략) ⑦ 영 제49조제4항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 1. (생 략) 2. <u>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</u> 3. ~ 5. (생 략) ⑧ (생 략) 제21조(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) ① (생 략) ② 영 제69조제1항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 1. ~ 4. (생 략) 5. <u>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</u> 6. (생 략) ③ · ④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6. ~ 8. (현행과 같음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⑧ (현행과 같음) 제21조(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6. (현행과 같음)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	
연 락 처	044-203-6318